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 발의: 김 진 천 의원)

의 안	26-97
번 호	

발의년월일: 2026. 8. .

발 의 자: 김진천, 고안경, 한송이,
원성혜, 차해영, 남해석
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조례 정비를 통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내 설치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, ‘총선거’라는 표현을 수정하여 조례 해석상 의미와 일치시킴으로써 원활하고 민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자구수정(안 제5조)

나.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회·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함(안 제8조 및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 내지 제54조, 제56조, 제71조

나. 예산조치: 불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소관부서: 의회사무국

라. 입법예고: 2026. 8. 24. ~ 8. 28.(예정)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총선거”를 “지방의회의원 총선거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호선”을 “재석위원 가운데 호선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호선”을 “재석위원 가운데 호선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중 “총선거”를 “지방의회의원 총선거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<u>총선거</u> 후 처음 선임된 위원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 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 까지 재임한다.	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---- ----- -----, ---- <u>지방의회의원 총 선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특별위원회 위원장) ① 특 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<u>호선</u> 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	제8조(특별위원회 위원장) ① --- ----- ----- <u>재석위원 가운데 호 선</u>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부위원장) ① (생 략)	제11조(부위원장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<u>호선</u>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	② ----- <u>재석 위원 가운데 호선</u>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【관 계 법 령】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6. 7. 1.] [법률 제21447호, 2026. 3. 5., 일부개정]

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3조(임시회)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6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요인: 없음

나. 관련조문

○ 일부개정안 제5조
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
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○ 일부개정안 제8조

제8조(특별위원회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,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○ 일부개정안 제11조

제11조(부위원장)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○ 일부개정안 부칙 제2조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중 “총선거”를 “지방의회의원 총선거”로 한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의회사무국 황인권
연 락 처	02-3153-6342